

[별표 18] <개정 2009.9.25>

가스용품의 합격표시(제37조 관련)

검사에 합격된 가스용품에는 「국가표준기본법」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(이하 “KC마크”라 한다)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각인(刻印) 또는 검사증명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가스용품이 일관공정으로 제조되는 경우에는 제조과정 중에 그 합격표시를 하게 할 수 있다.

1. 배관용 밸브의 합격표시는 각인으로 한다.

 높이: 5mm

2. 압력조정기·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·콧·전기절연이음관·전기용착폴리에틸렌이음관·이형질이음관·쿼카플러는 가목의 검사증명서, 강제혼합식가스버너·연소기·연료전지는 나목의 검사증명서, 고압호스·염화비닐호스·금속플렉시블호스는 다목의 검사증명서를 각각 부착한다. 또한, 복수인증제품으로 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22조의3에 따라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에는 KC마크의 높이와 색상을 변경할 수 있다.

가.  검사증명서의 크기: 15mm×15mm
은백색 바탕에 검은색문자를 원칙으로 한다.

나.  검사증명서의 크기: 30mm×30mm. 다만, 이동식부탄연소기의 경우에는 20mm×20mm로 한다.
은백색 바탕에 검은색문자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업무용 대형연소기·온수기·온수보일러·난방기·오븐렌지·냉난방기 및 강제혼합식가스버너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문자로 한다.

다.  검사증명서의 크기: 20mm×16mm
노란색 바탕에 검은색문자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호스제조과정 중 합격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크기와 바탕색을 그 호스규격에 맞게 할 수 있다.